



문서번호 : 17-03-공익인권변론센터-01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담당:송아람 상근변호사)
제 목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170308)
전송일자 : 2017. 3. 9.(목)
전송매수 : 총 2매

[보도자료]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제보되었습니다. 이는 불심검문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공무집행인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적법절차·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자로 해당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경찰관의 징계와 기본권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위법한 불심검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경찰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헌법에 새겨진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며, 청와대 또한 그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관행을 빙자한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법사례 발굴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7년 3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